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6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시장
- 나. 제출일 : 2017년 4월 4일
- 다. 회부일 : 2017년 4월 6일
- 라. 상정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전 호 관)

가. 제안이유

- 서울창의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연구논문 참여율 제고 및 논문의 질적 향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정연구 공모를 시민, 공무원 각각 연 1회로 통일하여 실시
- 시민대상 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으로 참여율 제고 및 질적 향상
-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울창의상의 효율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개정안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제안”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하여 혼란을 막고(안 제2조제1항), 공무원대상 시정연구논문 시상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며(안 제3조제3항제6호), 시민대상 시정연구논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안 별표)임.

- 서울 창의상은 창의제안 및 실행, 예산절감, 혁신시책, 지식경영(희망서울학 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등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4년간 창의상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4년간 서울시 창의상 수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 시책	상생 협력	예산 절감	지식경영			
	시민	공무원	시민	공무원				시민 논문	공무원 논문	동아리	
2013년	접수	9,100	2880	147	205	206	-	3	36	42	40
	채택	18	18	15	13	38	-	3	9	18	19
2014년	접수	8,157	1987	182	163	169	97	3	38	41	42
	채택	18	17	14	20	28	13	3	9	16	18
2015년	접수	6,080	1669	196	159	151	86	3	32	45	39
	채택	18	18	3	18	33	13	3	9	18	18
2016년	접수	4,042	53	11	90	125	98	4	33	34	52
	채택	18	17	11	18	34	17	4	9	17	18

※ 상생협력부문은 2014년부터 신설 운영

가. '제안'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마목 신설)

- 안 제2조제1항은 제안의 정의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이 제외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과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의 정의와 일치되도록 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p>

<p>「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p> <p>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p> <p>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p>	<p>「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p> <p>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p> <p>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p> <p>마. <u>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u></p> <p>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p>
---	--

※ 「공무원 제안 규정」과 「국민 제안 규정」의 제안의 정의

「공무원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p> <p>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p> <p>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p> <p>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p> <p>바. <u>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u></p> <p>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p> <p>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p> <p>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p> <p>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p> <p>바. <u>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u></p> <p>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p>

나. 공무원 시정 논문 시상 횟수 축소(안 제3조제3항제6호)

- 안 제3조제3항제6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 중에서 시정연구논문의 시상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2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1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 공무원 대상 시정연구논문 관련 창의상제도는 직원¹⁾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현장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시정연구논문을 공모²⁾하여 선정된 공무원을 서울 창의상(지식 경영부문)에 추천하여 창의상 수상여부를 결정³⁾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15년에는 45건의 논문이 접수되어 18건의 창의상이 시상되었고, 2016년에는 34건의 논문이 접수되어 17건의 창의상이 시상된바 있음.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개요>

- 추진근거 및 현황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지식경영부문)
 - 시정연구논문 접수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접 수	51편	47편	26편	44편	33편

※ '14년은 상반기 공모기간 축소(3 → 2개월) 등으로 실적 저조

- 공모분야 : 시정 전분야
 - 복지, 일자리, 안전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맞춤형 정책개발
 - 시정 분야별 시민 소통·참여 증진 및 정책만족도 향상방안
 - 서울시 관련 법령·제도·사무관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1)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직원 포함
 2) 조직담당관에서 시행
 3)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응모자격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직원
 - 전문분야의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연구직 공무원(직원)은 제외함
 - 공동 응모자는 응모자격을 갖춘 3인까지 가능함

- 시상계획
 - 시상내역 : 서울창의상 지식경영(시정연구논문)부문 추천

시상등급	시상편수	시 상 내 용
최 우수	1편	시장 상장 및 시상금 3,000천원
우 수	4편	시장 상장 및 시상금 각 2,000천원
장 려	12편	시장 상장 및 시상금 각 1,000천원

- 기타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하여 다수의 우수 논문 참여 유도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논문은 '17 시정연구논문총 「서울터전」 및 서울도서관 홈페이지(e-book)에 게재하여 시정제안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집행부는 공무원 대상 창의상 시상주기를 연1회로 축소하여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연구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시민맞춤형 정책개발 등을 위한 시정연구논문 공모 및 창의상 시상횟수를 축소하는 것은 공모 및 시상제도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행정효율과 공무원에 대한 수상기회 제한에 따른 제도취지에 반하는 비편익간의 검토를 통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개정안은 시정연구논문 공모 참여 대상인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직원들의 창의상 수상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바, 공무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시민 대상 시정 논문 시상금 확대(안 별표)

- 안 별표는 시민 대상 시정연구논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 3백만원, 우수 2백만원, 장려 1백만원에서 각각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단위 : 천원)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 서울시 창의상 관련 포상금을 살펴보면,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민의 창의제안은 최우수 5백만원, 우수 3백만원, 장려 2백만원으로 포상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연구논문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 최우수 3백만원, 우수 2백만원, 장려 1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창의대상은 1천만원이나 최근 3년간 수상자 없음.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서울창의 대 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사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상생협력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 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서울창의 대 상		10,000			
시 공무원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2016년 시민 대상 시정논문은 33편이 접수되었고, 그 중 9편이 선정되어 창의상이 수여되었으며, 2015년에는 32편이 접수되어 9편에 대해 창의상이 시상된바 있음.

- 한편, 동 제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연구논문을 공모받는 것이나, 실제로는 “대학(원)생 시정연구논문 공모⁴⁾”로 진행하는 등 참여대상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조례의 본래 취지의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개정안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포상금의 일정금액 상향 조정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책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와 공무원 등의 포상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http://mediahub.seoul.go.kr/gongmo/985432>(대학(원)생 시정연구논문 공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3조제3항제6호 중 “(연2회)”를 “(연1회)”로 한다.

별표 시민 란의 지식경영(시정연구논문) 란 이하 포상금 란의 최우수 란 “3,000”, 우수 란 “2,000”, 장려 란 “1,000”을, 각각 “5,000”, “3,000”, “2,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생략)</p> <p>2. (생략)</p> <p>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② (생략)</p> <p>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2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p> <p>④、⑤ (생략)</p> <p>[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u></p> <p>바. (현행 마목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연1회),-----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수상 대상</th> <th rowspan="2">부문별</th> <th colspan="3">포 상 금 (단위 : 천원)</th> </tr> <tr> <th>최우수</th> <th>우 수</th> <th>장 려</th> </tr> </thead> <tbody> <tr> <td>시 민</td> <td>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td> <td>3,000</td> <td>2,000</td> <td>1,000</td> </tr> </tbody> </table>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 (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수상 대상</th> <th rowspan="2">부문별</th> <th colspan="3">포 상 금 (단위 : 천원)</th> </tr> <tr> <th>최우수</th> <th>우 수</th> <th>장 려</th> </tr> </thead> <tbody> <tr> <td>시 민</td> <td>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td> <td>5,000</td> <td>3,000</td> <td>2,000</td> </tr> </tbody> </table>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 (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 (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 (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